##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20 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문수・김준혁

송옥주 · 박홍근 · 전진숙

민형배 • 이재강 • 이워택

전종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 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지원을 할 수 있다"를 "지원을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	제9조(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
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	한 지원 등) ①
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	
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	
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	
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<u>지원</u>	<u>지원</u>
<u>을 할 수 있다</u> . <후단 신설>	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용
	보조 및 행정적 지원의 기준과
	<u>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</u>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